

편자집강제철회에 대한 조사보고

1. 성동구 관내

1. 성동구청 건설과 건축계장 상대조사

A. 기철거완료분 32동

右는 5, 2층전거 전후에 걸쳐 편자집 신축 또는 기건축물을 계고서없이 경찰이 단독철거 진행하였음은 경찰구두 보고에 의한 것임.

B. 계고서발부 63동

右는 마장동 가축시장 건축용지내 건축물로서 7.25일까지 철거완료하려는 계고장을 발부 원제철거도중에 있음. 합법적이요 불가피한것을 인정함.

C. 군자동 이채민동 352동 천막촌

원래 중앙청부지에 철거명한 이채민들로서 원제위치가 저습하고 비위생적임으로 피아리방면에 이전 계획에 있다함.

D. 기타 아직 계고서 발부한건 전무함.

2. 성동경찰서 보안계 건축주인 상대조사

신거전 무허가 편자집 신축하는것을 幾回증지시킨것은 있으나 신거후는 없다.

3. 원정조사

4.29.1년5월5일 오전7시경 성동서 보안주인 지휘하에 경부경찰 7명 동원하여 신당동 약수동(10반) 산30번지에 건립한 편자집 6동을 철거 혹은 중파 실시한 사실이 있음.

2. 동대문구 관내

1. 청량리노점조합장 유천백및 총무 김서규 상대 조사

A. 철거노점수 215건

B. 노점철거일시 4.29.1년 5월17일 오전1시부터 5시까지

C. 철거상황 청량리경찰서 보안계장지휘하에 약40명의 정북경찰관이 동원되어 일방철거 일방추력으로 철거물운반등 전격적으로 철거 완료하였음. 그다음 55 「메이지」에 그것품보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할것입니다.

이것은 「미스」가되었습니다. 노점의 철거개황 미구조 그것이 " C" 다음에 " D" 로

D. 철거품가게는 경찰서후경에 무질서하게 산적하여 자기것을 분별키곤만함.
경찰서의 지시에 의거 일률적으로 1홀 기준 전면고 6척 광 4척5촌
후면고 5척 광 6척

건축비용으로서 매호당 8만원내지 1만원정도 그러면 215호에 215만원의 손해를 가져왔다.

D. 노점조합장 담금상행

경용번호 1호-103호까지는 매일

조합비는 50원

정소비는 60원

경포번호 104호-215호까지는 매일

조합비는 30원

정소비는 60원

계 90원

F. 노점조합에서 청량리경찰서에 납부한 전액 매점포당

1,700원 1,200원 700원 등

4291년 4월3일에 일금10만원

4291년 4월11일에 일금10만원

계 일금20만원을 납부하였고 기타절대비로 6만원여원을 지출한사실 있음.

G. 경찰서로서의 사건지시

5월11일부터 동월15일까지사이에 매일같이 경찰서에 호출당하여 철거하도록 권유를 받았으나 권노점조합원들이 불응할뿐더러 철마 강제철거
야 할까하는 의도에서 철거를 지연하여왔던것임.

H. 철거후 대책

경찰서에서는 동광여관전면에있는 공지(후기아채시장)로 이전토록 주시노력한 사실이있음. 차대지는 동광여관주인의 3인의 소유로 전면적

600평내지 700평가량으로 위치가 편재하여 고객이 최소하여 시장발전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이 반대할뿐만아니라 폐지관계가 대단

히 복잡하여 결정하기 곤란하였음.

5월17일 노점조합 대표 6명 지주측대표 3인이 경찰에 모여 대지사용상 타협회를한 결과 지주측 요구가 4번6척에 당시 상건들은 지주측이 책

입지고 그대신 조합원은 보통금 1만원씩을 사전납부하고 입주후 매월세금으로 매점포당 1백만원씩을 납부할것을 제의 그리고 조합의 운영권과 관리권

을 지주측에 일임하라는것이다.

현재 긴급구호책으로서 서에서는 청량리 시장조합과 타협하여 시장내 도로상에서 노점 보도록 주시하고있으나 전부터 보고있는 상인들이 반

대로 5월23일 현재로 약 70점포 정도가 개점하였다는 것이다.

I. 노점조합의 인적구조

던기 4291년 4월27일 총회를 개최하고 좌와 如히 선출하였음. 당일 창랑민정찰사를 대표하여 김보안계장이 참석하여 노점조합의 무한한 발전을 촉부하는 의미에서 절대적인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요지의 축사까지한 사실이 있다.

- 조합장 유 천 배
- 부조합장 김 서 구
- 총 무 김 시 구
- 감 사 홍 하 봉
- 감 사 이 광 석
- 고 문 강 영 우
- 고 문 경 기 원
- 평 의 원 12인

2. 동량여관주인머당 상대조사

조사이유

동량여관주인이 노점조합이전 후보지로되어있는 대지주의 한사람이요 이전에정지로서 선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알고있기 때문에 불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노점철기 이면에 잠재하는 정치성여부를 밝히는데 있음.

후보지로서 선정되기까지의 경위

전2대국회의원 김영수씨 주동으로서 창랑리176번지에 있는 공지 약700평을 이용하여 노점상인들을 환곳에 몰아넣어 노점시장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 그운영과 관리권을 장악함으로써 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4230년 12월경부터 착수하기 시작하여 김나년씨를외교로 내세워 지주측과 교섭을진 개한 결과 지주측과 타협이 성립되어 대지사용에 대한 체대계약 작성되어 지주측4인대표로 백모와 사용자측으로 김명수 김난년 한포 이포 4인이 공 동서명 날인이있었다함.

사용자측은 其後 노점조합을 철거시켜 계약된 공지로 이전토록 각종수단을 강구하였지만 여의치않아 임대기원을 연기하여 4월2일한 꼭시장을 이전시키겠다고 혹은 시정허가가 나왔다.

김명수씨부인과 이기봉씨부인 박머이란여사와의 친분관계로 허가가나왔다는등 차일 피일 지주측을 기만하여왔으므로 사용자측은 당황한 나머지 5월15일까지는 틀림없이 노점을 이전시킬터이니 한번만더 연기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만약其脾胃계시는 손해배상금으로 일금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5 월5일부로 약속수표50만원채권을 지급한사실이 있었음.

기간사용자측은 관계당국과 긴급한연락을 취하여 5월7일 드디어 노점이 철거되었음.

5월 17일 하오 2시 김명수씨가 직접 대방하여 내가 4회차 운동하러 나왔으나 골해결될터이니 잘 양해하여달라고 하기에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응할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함.

그때 청량리경찰서장 김진수총경을 상대로해서 조사했는데 이미 그 노점을철거해달라고 해서 청량리 서경을 불러서 서약서를 받으실 이 있습니다.

4290년 12월 18일

4291년 1월 22일

4291년 3월 26일 등 3차에 걸쳐 노점조합 유천백씨명의로 노점철거에 응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보관중에 있음.

a. 철거동기

도시미관상관제와 위생상관계등으로 상급관청으로부터 철거 지시도 받았을뿐만아나라 일거로보아 철거해야만되겠다고 통감한다마지 수칙에 권처 차진철거를 권유하였으나 차일 지연필으로 부득이 주민의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철거를 단행하였는 것입니다. 야간철거운운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다하여 꾸지람을 하지만 주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최선을다하느라고 각별히 야간을 이용하지않으면 안되었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바란다는 의견이있었다.

b. 사후대안

사전에 청량리176번지에있는 공채지로 이전하도록 주시하였고 지금도 계속노력중이요 또 별도방안도 고려중이었다.

허여간철거민들이 살수있도록 연구중이라는것이였다.

김명수씨관계는 언급을 회피하고있었다. 철거자재는 곧 상인(주민)께 연락하여가서가도록 지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져가지 않고있다.

2. 조사단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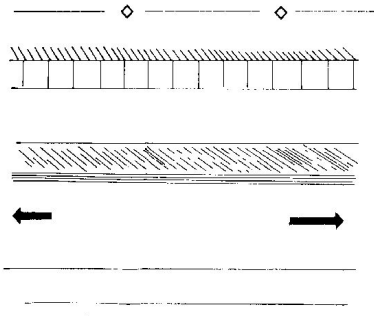
1. 철거노점의 위치적고찰

금반 철거당안노점은 위치상으로보아 긴급치않으며 도시미관상 큰 영향이없다고 인정하였음.

그림을보면 가운데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차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점포와도로사이에 이쪽으로 향해있는데 그다지 급하지 않지않는가 그래서 노점을 일정한 규격하에 통제하면 운영상 모를 가져올것이라고 봄.

(참고)



도심지 종로에서 야시노침이라하여 오후5시반만 되면 개점을 허가하는데 비할것같으면 이곳은 도시미관상은 물론 운영항안없다고 보았음.

고로 균일된 규격화에 엄격한 물체로서 통일된 행동을 취한다면 본래의 노점위치에 복구시켜주는것이 좋으리라 고 사료됨.

도로상 통행방해은문하지만 등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않을 뿐더러 별지장이 없으리라 고 인정함.

2. 철기동기의 정지성역부

상황은 如上하위 정지적 관련은 전무하나 다만 1개인의 이권관계 또는 건명수채일과가 노점상인을 한곳에 집결시킴으로서 조합의 운영관리권 을 경약함으로서 이권화하려는 야심에서 기성노점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여 독자적인 행동으로 철기운동들 전개한 사실이 노점들은 조합원으로 하여 금 더욱 종약감을 유발하였을뿐만 아니라 반대기운을 조성하였음을 발견하였음.

그다음 청람리시장노점조합규약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보아주십시오.

참 고

● 청량리시장노점조합규약

규약

- 1. 본조합은 청량리노점조합이라 칭한다.
- 1. 본조합은 국가시절에 순응하고 준법사상을 배양하여 일체단결 융화친목을 목적으로한다.
- 1. 본조합은 일인독재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상호협조 동일보조로 취행단결한다.
- 1. 본조합은 소요계정을필요(보유)한다.
- 1. 본조합은 상부상조를 도모한다.
- 1. 본조합은 상무후원을 선임하고 소요장부를비치한다.
- 1. 본조합은 고문야간명, 조합정1명, 부조합정1명, 총무1명, 상무1명, 이하반을 두어 반에는 각평의원을둔다.
- 1. 본조합은 가입금및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징수한다.
- 1. 가입금은 가입시에 1차 징수하고 조합비는 소정 금액을 매일징수한다.
- 1. 소정장소에서 1주일이상 무계출전연 또는휴연 병고등으로 장소를 사용하지않을시는 조합원자격을잃는다.
- 1. 조합비소정은 영입장소등금 제로하되 此틀3등금분한다.
- 역원 선출
- 1.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상무는 직선방식으로 다수득표로 선출한다.
- 1. 평의원은 조합원이 내선하여 조합장이 위촉한다.
- 임 무
- 1. 조합장은 조합을 총괄하고 유사시에 긴급총회소집권 및 조합원 징계권을 가진다.
- 1.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한다.
- 1. 총무는 조합전무를 총무하고 조합의 금고를 담당한다.
- 1. 상무는 경부일절 및 상무를시무한다.
- 1. 감사는 1년2회에걸쳐 본조합의 사무일절을 감사한다.
- 1. 평의원은 회원주지사형을 건담하고 조합원 대의원이며 조합비, 특별금징수 및 조합원의 동태를 조사보고하고 반을 통솔한다.
- 1. 조합원은 조합비납부의의무를 철하고 역원의선출 및 불신인 결의권을가진다.
- 불신인결의는 조합원의 3분의2이상으로 가결한다.
- 역원의 임기

1. 조합장 1년, 부조합장 1년, 총무 1년, 상무 1년, 평의원 1년으로 한다.

역원의 보수

1. 역원은 유급제로 한다.

1. 조합장은 보수지출을 임의로 못하고 역원회의에 심의지출한다.

1. 기타경비지출은 조합장임의로 지출할수 있다.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1회로 정한다. (4월)

1. 조합장은 적기시에 조합원에게 경리보고를 행한다.

1. 감사는 何時든지 경리부열람권을 가진다.

비품장부

1. 조합원명부, 역원명부, 조합비징수부, 원금수불, 총감정원장.

정 계

1. 조합원이 조합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불이행시는 역원회의를 소집하여 역원전원의 3분의2이상의 가결로 영연장소에서 수출 또는 적의정

계에 처한다.

단기(201년 4월 27일 (통과)

그 다음 동대문구 마포구를 마치고 성북구에 가서

3. 성북구 관내

구청에서는 계고장발부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자비하게 별지와같이 20동이나 판자집을 강제철거하여 路頭에 방황하고 있음. 거기에 명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판 가 절 책 가 조 사 서

| 성명 | 가 | 쪽 | 수 | 기 | 주 | 지 | 건 | 책 | 비 | 건 | 책 | 평 | 수 | 월 | 가 | 월 | 일 |
|-----|----|---|---|-----|---------|---|---|--------|---|---|----|---|---|----|-----|---|---|
| 박근화 | 3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7,000 | | | 3평 | | | 5월 | 3일 | | |
| 김영숙 | 6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6,000 | | | 5평 | | | 5월 | 13일 | | |
| 노순걸 | 10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15,000 | | | 2평 | | | 5월 | 13일 | | |
| 이근호 | 10 | | | 성북구 | 인암동 산15 | | | 70,000 | | | 5평 | | | 5월 | 5일 | | |
| 오근섭 | 4 | | | 성북구 | 인암동 산15 | | | 40,000 | | | 3평 | | | 5월 | 6일 | | |
| 장영문 | 9 | | | 성북구 | 성북동 산5 | | | 65,000 | | | 5평 | | | 5월 | 3일 | | |
| 이원희 | 3 | | | 성북구 | 성북동 산58 | | | 40,000 | | | 3평 | | | 5월 | 5일 | | |
| 경태진 | 8 | | | 성북구 | 성북동 산58 | | | 65,000 | | | 4평 | | | 5월 | 3일 | | |
| 박근수 | 7 | | | 성북구 | 정릉동 12 | | | 80,000 | | | 8평 | | | 5월 | 6일 | | |
| 김영순 | 3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25,000 | | | 4평 | | | 5월 | 6일 | | |
| 김석구 | 6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50,000 | | | 5건 | | | 5월 | 3일 | | |
| 홍영섭 | 7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50,000 | | | 5건 | | | 5월 | 3일 | | |
| 강덕문 | 7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25,000 | | | 6건 | | | 5월 | 3일 | | |
| 고순사 | 5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25,000 | | | 3건 | | | 5월 | 9일 | | |
| 정생 | 7 | | | 성북구 | 돈암동 2 | | | 80,000 | | | 5건 | | | 5월 | 3일 | | |
| 김영문 | 1 | | | 성북구 | 인암동 104 | | | 20,000 | | | 3건 | | | 5월 | 7일 | | |
| 박성보 | 4 | | | 성북구 | 인암동 104 | | | 20,000 | | | 3건 | | | 5월 | 14일 | | |
| 김용환 | 8 | | | 성북구 | 인암동 104 | | | 30,000 | | | 4건 | | | 5월 | 17일 | | |
| 오권양 | 6 | | | 성북구 | 인암동 104 | | | 30,000 | | | 3건 | | | 5월 | 17일 | | |
| | 4 | | | 성북구 | 남암동 | | | 70,000 | | | | | | 5월 | 6일 | | |

그다음 3번 조사한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 이것이 구청에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용산구청

1. 건축행정 주관하는 건축과로서는 철거에 대하여 하등의 노력은 사실이며 52층건물 기간중 계고서를 발부한건수 4건이나 상기한 4건도 현재 미철거 중이며 경찰이 단행한 백여호 철거에 있어서는 하등의 연락도없이 경찰이 단독 임의로한것임.

경찰서

1. 건축행정이 경찰의 소관사무는 아니다 위생 교통방화관계로 서에서 단독으로 철거한것이며 선거전부터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총선후에 할것이라고 말하여 사무적으로도 중형적으로 전면연락치않고 단독으로 철거를 집행한것이며 외에도 파출소 관내별로 선거후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분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또 파출소에서도 보고를 하지조차 않는것이 조사의원들이 조사를함으로 밝혀졌음.

철거건수

| | |
|-----------|------|
| 용산역전 고정노점 | 57건 |
| 용산역전 유동노점 | 66건 |
| 보광동 | 20여건 |
| 원효로4가 | 3건 |
| 기타각시경노점 | 30여건 |

원지에나가본 결과

1. 철거민들이 용산역전광장에 좌주케된것은 4288년 89년 90년 91년 이상 4년간에 통하여 건립된것이며 52층건물 기간중에는 1동도 건립되지 않았음.
2. 서약서는 제출한 일이있으나 계고서나 또는 철거명령을 사전에 접한일이 선거가 끝나기가 마땅게 보복적으로 철거하였다는 것임.
3. 철거호수도 경찰과는 수에 차이가 상당히 많음.
4. 실제철거한 수역전만도 200여호이며 경찰은 100여호라고함.
5. 현재집단수용(교통부부유회관) 수자만도 117세 배임.
6. 집단수용상장 수용소 1, 2, 3층(파괴거락)에 천막, 편자집으로 임시거주하고 있으니 차마 조사원들로서 환자 내일은 「거기」의 수용소같으며 기감상은 목불인

견이오며 조속한시일내에 긴급구조대책이 필요함.

1. 보광동

- 1.此지역은 편자집 철거민 집단수용부락면지도로변이은대 약1년 반전에 건립된 편자집 노점임.
 - 2.선거전에 말었다가 선거후에 갑자기 파출소에서 본서에 연락도없이 강제철거를 하였음.
 - 3.강제철거당시 경찰관들이 폭언을가하였다는데 其中 권순철이란 순경은 연장자들한테도 입에담지못할 폭언을하여 철거민을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비등케하고 있음.
- 보광동 지내철거수
20여호 (파출소단독)

1. 원효로4가

3동을 철거하다 중지하고 있음.

조사단의견

- 1.경찰은 사무적으로 타행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을 침해하였고 원권행위를 자행한 책임을 지야할것이며
- 2.시장은 조속한시일내에 행정체계를 확립시켜 주도면밀한 사후대책을 수립할것이며
- 3.시내전역에트한 무허가건축물, 편자집에대한 장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방향으로 시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영등포구

1. 단기4291년 1월이항 동5월2일까지 약4개월간 무허가편자집 건축동수는 568동임.

2. 철거계획고사발부상황

단기4291년 5월3일자로 신원동 후석동 본동 관내소재 무허가편자집 14동을 동 5월21일자로 영등포1가 94번지소재 무허가건축물1동
계15동을 철거키위하여 각각 계고서를 사전에 발부하였으나 철거사정이 시기적으로 타당치못하여 집행은 보류중에 있음.

3. 기타사항

특기할 사항無함.

1. 조사구역 중구청관내

2. 조사일자 5월23일

3. 편자집철거호수 118동

동별내역

가. 서울역전 신광동간도로 남산육교下左右 양동에 남창동 92동 5월16일 철거하였음.

계고장 발부 5월9일 12월 양일간에 발부하고 철거에 착수하였다함.

구호대책은전부 此지역은 도로공사관계로 매년공사시기에 철거를하면 동절축 공사불능시기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는관계로 본인들도 과이 무해는 없으나 계고장을 발부한 일자와 철거를강행한 일자와의 간격이 불과 34일밖에 없었다는 점만은 불평이있다한다. 방군공사를 착수중에있으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함.

나. 쌍림동 목정국민학교교지내에 건축되어있는 편자 19동 此지역은 4290년9월경부터 교사건축관계로 의회에서사까지 문제되었던 지역일뿐더러 교사건축공사관계로 5월16일자 계고장 발부하고 5월22일경 철거를 강행하였음.

계고시는 전부터 발부되어있으나 5월말일까지 철거 보류를 교육위원회로부터 약속은되어 있었으나 발의에 강행하였다.

4. 철거예정지

목정동공원지내 약100동

을지로2가로부터 종로2가 돌로산 약 30동

방산시장으로부터 종로5가로 통하는 도로장전동 약140여동 수표동공원지내 약60동등 약270여동은 금년도 예산상에도 책정되어있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함.

우와 如히 보고하나이다.

그다음 마포구 서대문구에 대한 조사보고를하겠습니다.

서대문관내 무허가건물 철거관계를 조사한바 관내철거대상은 160건으로서 선거전에 기건물수가 134건이며 선거후에 무허가문 건축한수가 18건에 해당되며 본16동은 편자집 철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비등되는 차시에 건축을 한것이며 계고서도 발부치 않고 강제철거한 기성건물이 6동이며 건축도중에 철거당할 수가 24건에 달하고 있음.

서대문관내 총보유수 2, 201동이라하나 확실한수는 확인되지 못하였음.

1. 계고장발부현황

거기에 수자가 나왔습니다.

| | | | | |
|------|-------|-----|-----|-----|
| (참고) | 현저동 | 41건 | 홍제동 | 14건 |
| | 의주로1가 | 1건 | 영선동 | 1건 |
| | 만리동1가 | 16건 | 연희동 | 1건 |

| | | | |
|------|-----|------|------|
| 총정2가 | 1건 | 총정3가 | 4건 |
| 복아원동 | 11건 | 교북동 | 1건 |
| 대현동 | 10건 | 신촌동 | 2건 |
| 내조동 | 5건 | 창천동 | 1건 |
| 낙동 | 3건 | | |
| 행촌동 | 6건 | | |
| 노고산동 | 13건 | 계 | 134건 |
| 증림동 | | | |

마포구관내

마포구관내 무허가건물철거 대상에 대하여 첫실태 左記와 如하오며 5월10일 경 계고서도 발부치 않은채 23동에 대하여 강제철거하였으나 시의회에서 관 자질 철거문제가 상정되어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334건에 계고서를 발부한것이 며 기중311건은 아직 미철거중이나 일익 강제철거가 단행되고 있음은 철거의 순서가 긴급치 않은곳을 선취한데도 있고 부득이 철거치않으면 아니될 처소는 보류된곳도 산전되고있음.

엄린동 일부에는 무허가 건축주에게 경찰관이 5,000원 내지 35,000원정도의 건축목인료로 차복한 경찰관들이 있었다는 실례도있음.

마포구관내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서 발부상황

| | | | |
|------|------|-----|------|
| 아원동 | 126건 | 신수동 | 3건 |
| 신공덕동 | 15건 | 사정동 | 22건 |
| 대흥동 | 21건 | | |
| 마포동 | 52건 | | |
| 용강동 | 2건 | | |
| 창진동 | 1건 | 합계 | 334건 |
| 고덕동 | 37건 | | |
| 염리동 | 26건 | | |
| 도화동 | 7건 | | |
| 마포강변 | 22건 | | |

종로구관내 무허가건축물 철거상황

1. 철거건수 21건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철거되는 위치로서 건축주자신이 가진 철거한것이 4동이며 경찰관이 동위 직선상에 건물7동에 대하여 강제철거하였으며 동위치에 존치된 무허가건축물 9동은 앞으로도 공사착임상 부득이해고장을 발부케된것임.
2. 구주면 및 사척공원, 풍로5가동 지역에 공사시공 위치에있는 무허가건물이 250건이나 되는바 이는 앞으로 철거케않으면 공사를시공지못할 형편에있음.

참 고

1. 조사구역

| | |
|------------------------------------|------------|
| 풍로구원내(철거대상) 무허가건축물실태 (총보유수 1,578동) | |
| 가 | 대 치 동 5건 |
| 나 | 대 벨 관 23건 |
| 다 | 대 화 동 4건 |
| 라 | 대 자 동 1건 |
| 로 | 대 계 동 3건 |
| 루 | 대 운 동 2건 |
| 려 | 대 현 동 20건 |
| 레 | 대 답 동 12건 |
| 려 | 대 묘 동 11건 |
| 로 | 대 산 동 585건 |
| 를 | 대 1가동 132건 |
| 린 | 대 3가동 92건 |
| 총 | 계 578건 |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 如左함.
이런것이있는데 그것은 성동구 관내입니다.

참 고

피해자명단如左함.

1. 임 순 북 석구5인 천막집

- 2. 성균관대학 1년생 고학생 편자집
 - 3. 최 종 환 편자집
 - 4. 김 수 교 편자집
 - 5. 이 계 두 부엌 증축파산
 - 6. 임 용 켈 증축공사파산
- 이상만 대부분 전기가간중에 신속 증축하였던 것으로서 사전증지 권고안바 있었다함.
- a. 노점의 설치계획및 구조
- 右노점등은 6년전인 4289년까지의 시설완료 동수는 전기215동으로서 기구조가 각각으로 산개되었음으로 미관상 미치는 영향이 불소함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4290년 8월 경에 청말리